

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9. 9. 25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9.9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19.9.10.

다. 상정일자: 제233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19.9.25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】

가. 제안이유

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개관 예정인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의 목적

- 1)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내실 있는 시설 운영으로 이용 근로자 만족도 제고
- 2) 운영과 시설관리의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

나. 민간위탁의 내용

- 1) 위탁기간: 2019. 11. 1. ~ 2020. 10. 30.(1년)
- 2) 위탁운영 시설현황
 - 시설명: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
 - 위 치: 마포구 매봉산로 18, 상암동(마포창업복지관 3층)
 - 면 적: 65 m^2
- 3) 위탁사무 범위
 - 근로 법률상담 및 교육
 - 근로자 복지사업,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
 - 근로여건 등 실태 파악,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
 -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등
- 4) 수탁기관 선정방법: 공개모집
- 5) 수탁기관 선정주체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(별도 구성)

다. 추진 일정

- 1) 공개모집 공고 : 2019. 10. 7.
- 2) 신청서 접수 : 2019. 10. 8. ~ 10. 18.
- 3) 선정 심사 : 2019. 10. 28. ~ 10. 31.(기간 중 1일)
- 4) 협약 체결 : 2019. 11월 중
- 5) 위탁 운영 : 2019. 11월 중(위탁기간 1년)

※ 추진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○ 본 동의안은

‘마포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’에 의해 마포구 매봉산로 18 (상암동) 창업복지관내에 설치 예정인 동 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하여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

- 추진근거인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에 근로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위 시설의 관리·운영을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.
-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사무의 범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노동자, 비정규직 등 노동조합 결성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부당한 노동, 인권 침해 등에 대한 법률 지원, 노동자 교육 및 취업 지원,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등이며, 이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것임.

참고로, 관내 36,504개 사업체 중 89.6%인 32,725개의 사업체가 10인 미만의 소규모, 영세 사업체임.

※ 취약계층 노동자란

근로복지기준법 제2조상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(기간제, 단시간, 파견노동자 등), 영세사업장 노동자, 건설노동자, 이주노동자,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동자를 말함.

- 센터의 설치장소는 매봉산로 18 소재 상암동 마포창업복지관 3층이며 규모는 65㎡이고 사무실과 상담실 등을 설치할 예정임.
- 센터의 운영 조직으로는 센터장 1명, 팀장 1명, 팀원 2명 등 총 4명으로 되어 있고,
- 위탁기간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라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1년으로 정함.

- 또한, 제출된 연간 위탁금액 산정 추계를 보면 소요예산은 359,000천 원(인건비 140,500천원, 사업비 200,500천원, 운영비 18,000천원)이며 이 예산은 ‘2019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공모계획(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-3844호, 2019.3.28.)’에 따라 전액 시비로 충당됨.
- 본 동의안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동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 역량과 풍부한 경험 등을 활용한 양질의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, 직영운영 시 행정조직의 확대가 불가피하며 전문성 부족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노동자 종합복지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- 다만,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취약계층노동자의 특성 및 노동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설이 되어야 할 것임. 또한, 이 시설의 설치 위치를 보건데 노동자의 이용상 편의성과 접근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선정 결과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아울러, 향후에도 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원 중 사업비 및 인건비를 시 보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【 관련 법령 】

<지방자치법>

-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<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>

- 제7조(관리·운영의 위탁)** ①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에 근로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(이하 "수탁운영자"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④ 근로복지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